

제 목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합니다.

성명	임용예정			시험시행요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응시자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제1항)	비고
	기관	직급	직위			

첨부 : 1. 구비서류
2. 사유서(필요한 경우)
3. 자격증 또는 학위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필요한 경우).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기입요령>

1. "기관"란에는 최하 보조기관 단위까지 기입하고 "직위"란에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내용 또는 직무분야를 기입한다.
2. "시험시행요건"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해당되는 "호"수를 기입한다.
3. "응시자격"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제1항의 해당되는 "호"수를 기입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또는 학위증 사본을 첨부한다.
5. "비고"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61조에 따른 시험분야의 지정, 선택과목의 지정, 시험과목의 변경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의 지정 등을 기재하여 그 사유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